

의안 번호	2486	【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성남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청소년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성남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
-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
 - 위 치: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
 - 규 모: 421.23㎡(지상 4층)
 -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위탁사무의 내용
 - 성남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
 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·선정

- 수탁자격 :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 또는 단체 등
- 2025년 소요예산 : 454백만원(국 101, 시 53, 구 300)

다. 근거법규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본 위탁 동의안은 성남청소년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회의 동의를 받아
- 성남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청소년센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**성남청소년센터 현황**

□ **시설개요**

- 소재지: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
- 규모: 연면적 421.23㎡(지상4층), 부지 : 126㎡
 - 1층: 플레이실(보드게임, 도서), 사무실
 - 2층: 멀티실(닌텐도, PC 등), 노래연습실, 댄스연습실
 - 3층: 다목적실
 - 4층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교실(2)

□ **운영현황**

- 위탁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운영주체: 울산흥사단(대표 박길순)
- 2025년 예산: 454,026천원(국 100,783 시 53,023 구 300,220)
- 종사자: 6명(센터장 1, 팀원 1, 배치지도사 1, 방과후아카데미 전담 3)
- 주요업무
 -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
 -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(저소득층 중학교 1·2학년 40명)
 -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
 - 기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
- 위치도



근거법규

「청소년기본법」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①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 계약의 기간·조건·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(이하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청소년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

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